

2023학년도 수시 신입생 모집

재외국민 특별전형 모집요강

〈2023년 3월 입학〉

C O N T E N T S

I. 모집단위 및 인원	1
II. 입학전형 일정표	2
III. 면접고사 대상자	2
IV. 지원자 유의사항 및 개인정보 수집 · 이용	3
V. 전형방법	5
VI. 학생 선발 방법	5
VII. 지원자격	6
VIII. 지원자격 유의사항	8
IX. 입학원서 접수안내	11
X. 제출서류	13
XI. 수험생 유의사항	14
XII. 합격자 유의사항	14
XIII. 대학안내	15
[별지 서식] 재외국민 학력 조회 동의서	
[별지 서식] 재외국민 종합기록표	
[별지 서식] 재외국민 사실증명 발급 · 열람 신청서	
[별지 서식] 재외국민 코로나19 관련 지원자격 인정 신청서	

※ 본 모집요강의 내용은 코로나19(COVID-19) 상황에 따라 일부 사항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원서 접수 전 본교 입시 홈페이지에
서 최종 모집요강을 반드시 확인 후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I.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대학	계열	모집단위	전공	코드번호	입학정원	모집인원	선발 가능 인원
무도대학	체능	유도학과		110	60	25	6
		유도경기지도학과		115	65		6
		무도스포츠학과	레슬링	121	35		3
			씨름	122			
			복싱	123			
		동양무예학과	검도	131	60		6
			옹무도	132			
			택견	133			
태권도학과	겨루기 및 품새	141	115	11			
체육과학대학	체능	경호학과		160	50	5	
		스포츠레저학과		210	45	4	
		체육학과		230	55	5	
		골프학과		250	30	3	
		무용과		310	35	3	
문화예술대학	예능	미디어디자인학과		320	40	4	
		회화학과		330	30	3	
		연극학과	(연기 / 공연제작 및 디자인)	340	40	4	
		국악과	현악	351	32	3	
			관악	352			
			성악	353			
			타악	354			
		실용음악과	보컬	361	30	3	
			피아노	362			
			기타	363			
			베이스	364			
			드럼	365			
			작곡	366			
		영화영상학과		370	30	3	
자연과학	문화재학과		380	30	3		
인문사회	문화콘텐츠학과		390	30	3		
AI융합대학	인문사회	경영학과		410	45	4	
		관광경영학과		430	35	3	
		경찰행정학과		460	45	4	
		중국학과		470	35	3	
	자연과학	AI학부	AI, 빅데이터	480	75	7	
보건복지과학대학	자연과학	산업환경보건학과		510	40	4	
		생명과학과		550	30	3	
		식품조리학부	식품영양, 외식조리	610	40	4	
		물리치료학과		620	30	3	
	인문사회	사회복지학과		630	45	4	

* 연극학과 전공란에서 괄호로 표시된 내용은 교육과정 상 운영단위의 표시임

모 집 인 원

1. 총 입학정원의 2% 이내,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 이내에서 정원 외 선발(총 25명)

— 국외근무자의 자녀

2. 정원에 관계없이 본교 수용가능 범위 내에서 정원 외 선발

— 전 교육과정 이수 재외국민, 북한이탈주민

※ 특수체육교육과 지원 불가

II. 입학전형 일정표

구분	일정	장소	비고
입학원서접수	2022.07.04.(월) 10:00 ~ 08.(금) 15:00	uwayapply.com (유웨이어플라이)	인터넷 접수만 실시
서류제출기간	2022.07.29.(금) 15:00까지	본교 입학관리과	본인, 대리인, 우편제출 가능 (토·일요일·공휴일 제외)
면접고사 (해당자만 응시)	2022.07.18.(월)	온라인 화상 면접	면접 고사시간 발표는 2022년 7월 14일(목) 15:00 본교 입학 홈페이지에 게시 예정
최초합격자 발표	2022.10.25.(화) 15:00 이후	본교 입학홈페이지	합격자는 본교 입학 홈페이지에서 합격통지서와 문서등록 안내문 출력
합격자 최초 등록 (문서 등록)	2022.12.16.(금) 09:00 ~ 19.(월) 16:00	문서등록	- 본교 입학관리과 홈페이지에서 합격자 조회 후 안내에 따라 문서등록(서류를 통하여 등록 여 부를 확정하는 의사 표현)을 해야 함 - 등록기간에 문서등록을 완료하고 등록금 확정 후 최종 등록기간에 완납 ※ 문서등록을 하지 않으면 합격이 취소됨
총원 1차	합격자발표	2022.12.19.(월) 19:00 이후	
	등 록	2022.12.20.(화) 09:00 ~ 21.(수) 16:00	
총원 2차	합격자발표	2022.12.21.(수) 19:00 이후	
	등 록	2022.12.22.(목) 09:00 ~ 16:00	
총원 3차	합격자발표	2022.12.22.(목) 18:00 이후	
	등 록	2022.12.23.(금) 09:00 ~ 16:00	
총원 4차	합격자발표	2022.12.23.(금) 18:00 이후	
	등 록	2022.12.24.(토) 09:00 ~ 26.(월) 16:00	
총원 5차	합격자발표	2022.12.26.(월) 18:00까지	
	등 록	2022.12.27.(화) 09:00 ~ 16:00	
합격자 최종 등록기간	2023.02.07.(화) 09:00 ~ 09.(목) 16:00	본교 지정 금융기관	

III. 면접고사 대상자

1. 국외근무자의 자녀는 면접고사에 반드시 응시하여야 한다.(단, 전 교육과정 이수 재외국민 및 북한이탈주민은 면접고사 응시 대상자가 아님)

IV. 지원자 유의사항 및 개인정보 수집 · 이용

주 의

“대입 지원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하거나 이에 협조하여 공정한 학생선발 업무를 방해한 경우, 입학 무효 및 별도의 처벌을 받을 수 있음” 또한 “본교 및 타 대학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하여 입학이 취소된 자는 일정 기간 동안 본교에 지원할 수 없음”

[지원자 유의사항]

1. 복수지원 허용 범위

- 가. 수시모집 대학(교육대학 포함, 전문대학 · 산업대학 제외)에 있어서는 전형기간이 같아도 최대 6개 전형 이내에서 복수지원이 가능함

2. 복수지원 금지 사항

- 가. 수시모집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포함)의 합격자(최초 합격자 및 총원 합격자)는 정시모집 및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음
- 나. 대학(교육대학 포함, 산업대학 · 전문대학 제외)은 수시모집의 모든 전형에서 6개 전형을 초과하여 지원한 자에 대해서는 접수를 인정하지 않음
- 다. 전문대학 수시모집 합격자는 다른 모집시기에 실시하는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및 전문대학의 모집에 지원할 수 없으며, 대학, 산업대학 및 교육대학의 수시모집에 합격한 자도 전문대학이 실시하는 다른 모집시기에 지원할 수 없음
 - 산업대학 수시모집 합격자는 다른 모집시기에 실시하는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및 전문대학의 모집에 지원할 수 없으며, 대학, 교육대학 및 전문대학의 수시모집에 합격한 자도 산업대학이 실시하는 다른 모집시기에 지원할 수 없음
- 라.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포함)’ 과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대학, 각종학교 간’에는 복수지원 금지 및 이중등록 금지 원칙을 적용하지 않음
 -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대학: 육 · 해 · 공군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경찰대학,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한국폴리텍대학,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등
- 마. 대학별 입학전형이 종료된 후, 복수지원 위반 사실이 전산자료 검색을 통해 확인될 경우 입학을 무효로 함

3. 이중등록 금지

- 가. 모집시기별로 지원하여 입학할 학기가 같은 2개 이상의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포함)에 합격한 자는 1개의 대학에만 등록(등록 확인 문서등록 또는 예치금 납부 포함)하여야 함
- 나. 수시모집 문서등록 또는 예치금 납부 시 다수의 대학에 납부할 수 없으며(1개 대학에만 납부해야 함), 수시모집 문서등록 또는 예치금을 납부하는 것은 대학에 등록하겠다는 의사 표현으로 문서등록 또는 예치금 납부 이후 이 사실을 포기할 수 없음
 - 수시모집 문서등록 또는 예치금 납부 시 다수의 대학에 문서등록 또는 예치금을 납부한 자는 대입지원 위반자로 처리하여 합격 사실을 취소할 수 있음
- 다. 대학에 등록한 자가 타 대학에 총원 합격하여 등록하고자 할 경우에는 먼저 등록한 대학에 등록 포기 의사를 명확히 전달한 후, 타 대학 총원 합격 대학에 등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라. 수시모집 합격자가 총원 합격자 발표 기간 중 다른 대학의 총원 합격 통보를 받은 경우, 차순위 수험생의 합격 기회 박탈 등 선의의 피해자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합격자는 등록을 원하지 않는 대학에 등록 포기 의사를 즉시 전달하여야 함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1. 대학 입학전형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

- 가. 본교는 대학 입학전형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고자 합니다.
 나. 본교의 합격자로 분류될 경우 수집된 개인정보는 대학의 입학, 장학, 학사 통계업무에서 활용됩니다.
 다. 대학에서 제공하는 기타 안내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는 이용하지 않으며, 개인정보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는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필수)

항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수험생 정보	입학, 장학, 학사 통계업무 (학적부 생성, 학력 조회, 오리엔테이션 안내문자 발송, 장학생 선발 안내 문자 발송)	10년
보호자 정보		
학교 정보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지원 및 등록 위반자 확인 등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대학 입학전형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제공받는 기관	제공하는 항목	제공목적	보유기간
국제교류교육원 지정 협약업체	성명, 주소, 이메일, (휴대)전화번호	어학 강좌 프로그램 안내	1년
학점은행제		학점은행제 입학안내	

※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기타 고지 사항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고유식별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개인정보 처리사유	고유식별정보 항목	수집 근거
학사 관리(학적부 생성)	주민등록번호	고등교육법시행령 제73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V. 전형방법

1. 정원 외 모집인원 2%(총 25명) 이내

지원자격	일괄합산 전형		전형 총점	비고
	서류	면접		
국외근무자의 자녀	적·부	100%	100%(100점)	서류상 지원 자격 미달 시 불합격

2. 정원 외 모집인원 2%(총 25명) 이외 무제한

지원자격	서류	전형 총점	비고
전 교육과정 이수 재외국민	100%	100%(100점)	서류상 지원 자격 미달 시 불합격
북한이탈주민			

※ 서류전형은 재학기간, 체류기간, 재직기간 및 최종 학교 성적 등으로 실시함

VI. 학생 선발 방법

1. 국외근무자의 자녀는 총 입학정원의 2% 이내,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 범위 내에서 면접점수에 의한 성적순위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2. 미등록 및 등록금 환불로 인해 결원이 발생할 경우 충원 발표 일정에 따라 충원 합격자를 발표한다.
3. 입학 전형성적 및 수학능력이 현저하게 미달되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불합격 처리할 수 있다.
4. 동점자는 아래와 같은 순위에 의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 가. 면접성적(문항 영역 순 성적)
 - 나. 국외학교 수학기간이 오래된 자
5.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성적에 관계없이 불합격 처리한다.
 - 가. 본교에서 실시하는 해당 모집단위의 면접고사에 불참한 자(해당자에 한함)
 - 나. 면접고사를 실시하는 모집단위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해당자에 한함)
 - 다. 수업이행 및 진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자 또는 학업이 곤란한 정신질환 및 전염병 질환자로 판명이 된 자

VII. 지원자격

- ① 근무자 및 학생뿐만 아니라 배우자도 일정 기간 동안 국외에 같이 체류해야 함
- ② 해당국의 교육관계 법령 등에 의한 학제 상 월반(전·편입학 시 월반은 미인정) 또는 조기졸업제도가 허용된 경우 초·중·고 12년 과정 중 월반 또는 조기졸업으로 인하여 부족하게 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함
- ③ 검정고시, 홈스쿨링, 사이버학습, 한글학교 등의 학력인정방법은 재외국민 특별전형 지원자격에서는 인정하지 않음
 - 단,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6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국내 검정고시는 인정함
- ④ 동일 학년(학기) 중복 수료로 인한 수학 기간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 단, 학제 차이로 인한 중복은 재학이 연속적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복수 발생 인정)
 - 누락된 학기는 중복된 1개 학기로 대체할 수 있음
 - 2개 학기 이상 연속된 중복 학기의 경우 누락된 1개 학기로 대체할 수 있음
 - 중복 학기 등 지원자격 검토 시 제출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부정·편법·악용 사례로 판명될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음

예시① 중복과 관련하여 지원자격 충족 사례(학제 차이로 인한 경우에 한함)

[D: 국내학교, A: 국외학교]

학년(G)	1	2	3	4	5	6	7	8	9	10	11	12
학기	1	2	1	2	1	2	1	2	1	2	1	2
재학기간	D	D	D	D			D	D	D	D	D	D
			A	A	A	A	누락				누락	A

중복학기 G2-2로 G4-2 대체 가능 중복학기 G7-1로 G9-1 대체 가능 G11-1 학제 차이로 인한 누락으로 인정

예시② 중복과 관련하여 지원자격 미충족 사례(학제 차이로 인한 경우에 한함)

[D: 국내학교, A: 국외학교]

학년(G)	1	2	3	4	5	6	7	8	9	10	11	12
학기	1	2	1	2	1	2	1	2	1	2	1	2
재학기간	D	D	D	D	D		D	D	D	D	D	D
			A	A	A	A	누락	누락			누락	A

2개 학기 연속된 중복 학기 G2-2 ~ G3-1 중 한 개 학기만 G4-2 ~ G5-1 중 한 개 학기 대체 가능 중복학기 G7-1로 G9-1 대체 가능 G11-1 학제 차이로 인한 누락으로 인정

주의

예시③ 중복과 관련하여 지원자격 미충족 사례(학제 차이로 인한 경우에 한함)

[D: 국내학교, A: 국외학교]

학년(G)	1	2	3	4	5	6	7	8	9	10	11	12
학기	1	2	1	2	1	2	1	2	1	2	1	2
재학기간	A	A	A	A	A	A	A	A	D	D	D	D
										누락	A	A

학제차이로 인하여 1개 학기가 부족한 경우로 학력은 인정되나, 중·고교 국외 재학기간이 총 5학기로 지원자격 미충족

예시④ 중복과 관련하여 지원자격 미충족 사례(학제 차이로 인한 경우에 한함)

[D: 국내학교, A: 국외학교]

학년(G)	1	2	3	4	5	6	7	8	9	10	11	12
학기	1	2	1	2	1	2	1	2	1	2	1	2
재학기간							D	D	D	D	D	D
	A	A	A	A	A	A	A	A	A	누락	A	A

중복된 1개 학기로 누락된 학기가 대체되나, 중·고교 국외 재학기간이 총 5학기로 지원자격 미충족

예시⑤ 중복과 관련하여 지원자격 미충족 사례

[D: 국내학교, A: 국외학교]

학년(G)	1	2	3	4	5	6	7	8	9	10	11	12
학기	1	2	1	2	1	2	1	2	1	2	1	2
재학기간	D	D	D	D	D	D	D	D	D	D	D	D
								A	A	A	A	A

고등학교 과정이 1개 학기만 포함되어 지원자격 미충족

예시⑥ 중복과 관련하여 지원자격 미충족 사례

[D: 국내학교, A: 국외학교]

학년(G)	1	2	3	4	5	6	7	8	9	10	11	12
학기	1	2	1	2	1	2	1	2	1	2	1	2
재학기간	D	D	D	D	D	D	D	D	D	D	D	D
										A	A	A

2개 학기 연속된 중복 학기 G10-1 ~ G10-2 중 한 개 학기만 대체 가능하여 고등학교 과정이 1개 학기만 포함되므로 지원자격 미충족

1. 국외근무자의 자녀

: 부모 중 1인 이상이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을 국외근무자로 재직/사업/영업하는 기간 동안, 국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서 고교 과정 1개 학년 이상(해당 기간에 진행되는 학제 상의 모든 학기)을 포함하여 중·고교 과정을 3개 학년 이상 수료한 자

※ 국외근무자 :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의 국외 근무/사업/영업을 목적으로 배우자 및 학생과 함께 국외에 체류한 자

2. 전 교육과정 이수 재외국민

: 국외에서 우리나라 초·중등 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및 귀화 허가를 받은 결혼이주민

가. 국외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국내 초·중등학교 재학 여부와 관계없이 전 교육과정 이수자로 인정함

① 국외 동일 학년제에서 초·중·고 전 과정을 이수한 경우, 이수 연한이 12년이 되지 않더라도 전 교육과정 이수자로 인정함

② 학년제가 다른 2개 이상 학교의 경우 우리나라 학년제에 준하여 12년 이상을 이수해야 함. 단, 학년제로 인해 부족한 학교 교육과정의 기간만큼은 해당국 대학에서 이수한 기간을 고등학교 과정 이수로 인정함

나. 학제가 다른 2개 학교 이상에서 12년 이상의 초·중등 과정을 이수한 자가 전·편입학하는 과정에서 학제 차이로 불가피하게 총 재학기간이 누락된 경우 1학기(6개월) 이내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함

다. 국외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방학, 국외학교 및 해당 국가에서 정한 휴일에 국내에 임시로 체류하는 경우에도 전 교육과정 이수자로 인정함

3. 북한이탈주민

: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의해 교육감이 학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년 이상의 우리나라 학교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에 상응한 학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한 북한이탈주민

VIII. 지원자격 유의사항

1. 최저 국외 재학·체류·재직 기간

구분	최저 국외 재학·재학·체류 기간				
	학생		보호자		배우자
	재학	체류	재직	체류	체류
국외근무자의 자녀	3년	3/4	3년	2/3	2/3

[국외 재학기간]

- 학생이 학기 개시일부터 국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 재학하였을 경우 :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 (약 365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함. 단 해당 1개 학년 기간 내 모든 학기를 이수한 자는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직전 학기 종료일까지를 1개 학년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함
- 학생이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일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 : 편입학 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약 365일) 되는 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함

[국외 체류일수 조건]

- 학생이 학기 개시일부터 국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 재학하였을 경우 :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 (약 365일)까지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학생 본인은 3/4 이상을, 국외 근무/사업/영업자와 그 배우자는 2/3 이상을 국외근무자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해야 함
- 학생이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일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 : 편입학 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약 365일) 되는 일까지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학생 본인은 3/4 이상을, 국외 근무/사업/영업자와 그 배우자는 2/3 이상을 국외근무자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해야 함

구분	내용
국외 재학기간	• 고교과정 1개 학년 포함 중·고교 과정 3년 이상
국외 체류기간	• 학생 : 학생 국외 재학기간 중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3/4 이상 • 부모 : 학생 국외 재학기간 중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2/3 이상
국외근무자 재직기간	•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의 국외근무/사업/영업

(참고 1)

- 학생 및 보호자의 체류일수 산정 시에는 학생의 국외 재학기간과 보호자의 국외 근무기간에 모두 해당하는 기간에 한하여 체류일수로 인정함
- 학생이 실제 재학 및 체류 중이라 하더라도 보호자의 파견(국외근무)기간이 종료되었다면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학생과 보호자 모두 국외 체류일수로 인정하지 않음(반대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
- 체류일수 산정 시 소수점 절사

구분	기간
국외 체류일수 산정기준	국외 재학기간에 해당하는 학사일정
보호자 국외 근무기간	국외 파견 시작일 ~ 파견 종료일
학생 국외 재학기간	국외 학교 전입일(편입일) ~ 전출일(졸업일)
국외 체류일수 인정 기준	체류일수 인정 기간

(참고 2)

2. 국외학교의 소재지

: 부모의 근무지 국가에 소재한 학교만 인정

3. 「국외학교」란 국내가 아닌 국외에 소재한 학교로서 해당국의 관계 법령 등에 의하여 소정의 학력이 인정되는 초·중·고등학교를 말하며 유아원, 유치원 및 어학연수 목적의 교육기관과 국내 소재 외국인 학교 등은 제외한다.

4. 국외근무자의 근무 형식

: 국외에 상근하는 경우에 한함(교육·연수·출장 형식의 단기 근무자는 제외)

5. 코로나19(COVID-19)에 의한 지원자격 미충족 기간에 대한 인정

- 가. 대상 : 코로나19로 인한 재직기간, 재학기간, 체류기간 등 지원자격 미충족 사유가 발생한 경우 관련 소명자료를 통해 해당 기간에 대한 지원자격 인정이 가능함
- 나. 소명자료 : 코로나19 관련 지원자격 인정 신청서(본교 양식) 및 관련 증빙 서류
- 다. 인정 기준 : 코로나19에 의한 사유임이 명확히 입증되는 기간에 한하여 신청 가능하고, 자격심사 과정에서 관련 추가 자료 또는 소명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 부족 또는 추가 자료 미제출 시에는 자격 인정이 불가함

6. 지원자격 판정 예시

가. 온전한 학기를 이수한 자

예시 내용	
- 국외 학사일정 : 중2 과정(2017.08.01. ~ 2018.06.23.), 중3 과정(2018.08.01. ~ 2019.06.23.), 고1 과정(2019.08.01. ~ 2020.06.23.) - 국외 재학기간 : 중2 과정(2017.08.01. ~ 2018.06.23.), 중3 과정(2018.08.01. ~ 2019.06.23.), 고1 과정(2019.08.01. ~ 2020.06.23.) - 국외 재직기간 : 2017.08.01. ~ 2020.07.31.(발령일 기준) * 국외근무자, 배우자, 학생은 매 학년 재학기간 동안 체류기간을 충족했다는 전제 조건 * 상기 기간 외에는 국외 체류 및 근무가 없음	
1	질문 학생의 재학기간 인정 기준 답변 학생의 재학기간은 (예시1)과 같이 원칙적으로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365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인정하지만, 중2 과정(2017.08.01. ~ 2018.07.31.), 중3 과정(2018.08.01. ~ 2019.07.31.), 고1 과정(2019.08.01. ~ 2020.07.31.) (예시1) 대부분의 학생이 그렇듯이 해당 1개 학년 기간 내 모든 학기를 이수한 경우(온전한 학기를 이수한 경우)에는 (예시2)와 같이 학기 개시일부터 학기 종료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인정합니다. 중2 과정(2017.08.01. ~ 2018.06.23.), 중3 과정(2018.08.01. ~ 2019.06.23.), 고1 과정(2019.08.01. ~ 2020.06.23.) (예시2)
2	질문 국외근무자의 재직기간 산정 기준 답변 국외근무자는 역년으로 통상 3년을 재직해야 하므로 2017.08.01.부터 2020.07.31.까지 재직해야 합니다. 학생의 재학이 학기 개시일부터 재학하여 온전한 학기를 이수하여 재학기간이 축소된다고 하더라도 재직기간의 기준이 축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3	질문 국외 체류일수 산정 기준 답변 학생이 학기 개시일부터 재학한 경우 (예시3)과 같이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약 365일)을 기준으로 매 학년마다 학생 본인은 3/4 이상을(273일 이상), 국외근무자와 배우자는 2/3 이상(243일 이상) 체류일수를 충족해야 합니다. 중2 과정(2017.08.01. ~ 2018.07.31.), 중3 과정(2018.08.01. ~ 2019.07.31.), 고1 과정(2019.08.01. ~ 2020.07.31.) (예시3)
4	질문 학생이 고1 과정 수료 후 2020.06.25. 귀국 시 지원자격 충족 여부 [단, 고1 과정(2019.08.01. ~ 2020.07.31.) 동안 국외 체류일수를 충족한 경우] 답변 충족
5	질문 국외근무자의 배우자가 학생과 함께 2020.06.25. 귀국 시 지원자격 충족 여부 [단, 고1 과정(2019.08.01. ~ 2020.07.31.) 동안 국외 체류일수를 충족한 경우] 답변 충족
6	질문 국외근무자가 발령 종료일이 변경되어 2020.06.25. 귀국 시 지원자격 충족 여부 [단, 고1 과정(2019.08.01. ~ 2020.07.31.) 동안 국외 체류일수를 충족한 경우] 답변 미충족(국외근무자의 국외 재직기간은 통산 3년(1,095일) 이상이어야 하므로 2020.07.31.까지 재직 필요)

나. 중간에 편입학한 경우 1

예시 내용	
- 국외 학사일정 : 중2 과정(2017.08.01. ~ 2018.06.23.), 중3 과정(2018.08.01. ~ 2019.06.23.), 고1 과정(2019.08.01. ~ 2020.06.23.) - 국외 재학기간 : 중2 과정(2017.09.01. ~ 2018.06.23.), 중3 과정(2018.08.01. ~ 2019.06.23.), 고1 과정(2019.08.01. ~ 2020.06.23.) - 국외 재직기간 : 2017.09.01. ~ 2020.08.31.(발령일 기준) * 국외근무자, 배우자, 학생은 매 학년 재학기간 동안 체류기간을 충족했다는 전제 조건 * 상기 기간 외에는 국외 체류 및 근무가 없음	
1	질문 학생의 재학기간 인정 기준 답변 학생이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일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 편입학 일자부터 역년으로 1년(약 365일)이 되는 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하기 때문에 (예시4)와 같이 추가적으로 고2 과정 한 달의 재학기간이 필요함 중2 과정(2017.09.01. ~ 2018.06.23.), 중3 과정(2018.08.01. ~ 2019.06.23.), 고1 과정(2019.08.01. ~ 2020.06.23.), 고2 과정(2020.08.01. ~ 2020.08.31.) (예시4)
2	질문 국외근무자의 재직기간 산정 기준 답변 국외근무자는 역년으로 통상 3년을 재직해야 하므로 2017.09.01.부터 2020.08.31.까지 재직해야 합니다.
3	질문 국외 체류일수 산정 기준 답변 학생이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일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 편입학 일자부터 역년으로 1년(약 365일)이 되는 날짜까지 각각의 1개 학년마다 학생 본인은 3/4 이상을(273일 이상), 국외근무자와 배우자는 2/3 이상(243일 이상) 체류일수를 충족해야 합니다. 단, (예시5)와 같이 국외근무자 및 배우자에게 유리하게 체류일수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① 중2 과정(2017.09.01. ~ 2018.08.31.), 중3 과정(2018.09.01. ~ 2019.08.31.), 고1 과정(2019.09.01. ~ 2020.08.31.) ② 중2 과정(2017.09.01. ~ 2018.07.31.) + 고2 과정(2020.08.01. ~ 2020.08.31.), 중3 과정(2018.08.01. ~ 2019.07.31.), 고1 과정(2019.08.01. ~ 2020.07.31.) (예시5)

다. 중간에 편입학한 경우 2

예시 내용	
- 국외 학사일정 : 고1 과정(2017.08.01. ~ 2018.06.23.), 고2 과정(2018.08.01. ~ 2019.06.23.), 고3 과정(2019.08.01. ~ 2020.06.23.) - 국외 재학기간 : 고1 과정(2017.09.01. ~ 2018.06.23.), 고2 과정(2018.08.01. ~ 2019.06.23.), 고3 과정(2019.08.01. ~ 2020.06.23.) - 국외 재직기간 : 2017.09.01. ~ 2020.08.31.(발령일 기준) * 국외근무자, 배우자, 학생은 매 학년 재학기간 동안 체류기간을 충족했다는 전제 조건 * 상기 기간 외에는 국외 체류 및 근무가 없음	
1	질문 학생의 재학기간 인정 기준 답변 학생이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일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 편입학 일자부터 역년으로 1년(약 365일)이 되는 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1달의 재학기간이 필요하나 고3 과정 후 고등학교 과정을 졸업하기 때문에 지원자격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다만, 중1 ~ 중3 과정 중 국외 재학, 체류, 재직기간이 충족된다면 지원자격 충족 가능성은 있습니다.

IX. 입학원서 접수안내

1. 원서접수 주요사항

가. 접수기간 : 2022.07.04.(월) 10:00 ~ 08.(금) 15:00

나. 접수방법 : 용인대학교 입학 홈페이지 접속 후 「재외국민 특별전형 인터넷 원서접수」 배너 클릭

다. 전형료

구분	전형유형	면접 구분	전형료		인 터 넷 원서접수 수 수 료	납부 총액
			기본전형료	면접고사 전 형 료		
재외국민	국외근무자의 자녀	면접 대상	70,000원	30,000원	5,000원	105,000원
	전 교육과정 이수 재외국민	-	70,000원	-	5,000원	75,000원
	북한이탈주민					

라. 전형료 결제 후 수험번호가 부여되면 접수가 완료된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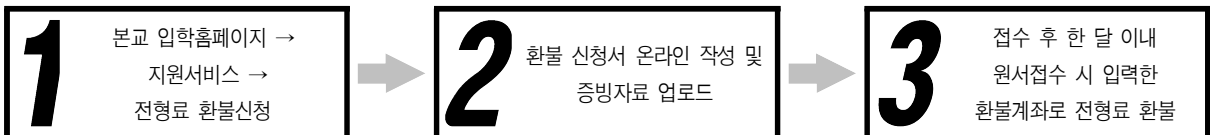
마. 대학입시의 공정성 확보와 타 수험생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원서접수가 완료된 이후에는 지원 사항을 취소할 수 없으며 전형료를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바. 단순변심, 지원자격 미달 등의 경우엔 원서접수가 완료된 이후부터는 전형료가 반환되지 않음

사. 면접고사에 불참한 자는 전형료를 반환하지 않음(타 대학 고사일 중복으로 인한 불참 포함). 단, 질병 또는 사고 등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전형 응시가 불가능한 경우 아래 해당 일까지 전형료 환불 신청을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전형료를 전액 환불함(인터넷 원서접수 수수료 제외, 증빙자료 미 제출 시 신청 불가 및 환불 불가). 또한 지정된 신청 기간 이후에는 어떠한 사유라 하더라도 접수 불가

★ 전형료 환불 마감 일시 : 2022. 07. 15.(금) 15:00까지(기간 이후 신청 불가)

① 온라인 신청



※ 전형료 환불 계좌를 공통원서 작성 시 필히 사전 입력해야 하며, 원서접수가 완료된 이후에는 환불계좌를 추가로 입력할 수 없음

② 방문 신청 : 본교 입학관리과로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증빙자료 제출(토, 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2. 입학원서 접수방법



※ 입학원서접수 마감 시한 이후에는 접수할 수 없으니 사전에 입력 및 전형료 결제를 해야 하며, 시한 경과로 인하여 원서접수를 못하는 경우는 수험생 본인의 책임임

3. 서류 제출방법

- 가. 제출기간 : 2022.07.29.(금) 15: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나. 제출장소 : (우) 17092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용인대학로 134 용인대학교 대학본부 1층 입학관리과
- 다. 제출방법 : 등기우편 또는 방문제출(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 라. 제출서류 도착확인 : 해당 인터넷 원서접수 업체 홈페이지나 본교 입학홈페이지 ipsi.yongin.ac.kr에서 확인 가능
단, 서류의 도착 유무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지원자는 모든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해야 함

4. 전형료 비례환불

- 가. 본교는 고등교육법 제34조의 4 제5항에 의거 입학전형을 마친 후 입학전형 관련 수입·지출에 따른 잔액이 발생할 경우,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이 납부한 입학전형료에 비례하여 반환할 예정이며, 전형료 반환은 2023년 4월 30일 이전 본교가 공지한 반환 기간에만 반환한다.
- 나. 입학전형료 반환 방법은 본교 직접 방문 또는 반환대상자가 인터넷 원서접수 시 입력한 금융기관의 환불 계좌로 이체 중 하나를 원서접수 시 선택하여야 한다.
- 다. 반환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직접방문 창구 운영 및 금융기관 전산망 이용에 드는 비용 등)이 발생할 경우 비용을 차감하고 반환할 예정이며, 반환할 금액 이상이면 반환하지 않는다.
- 라. 전형료 반환 정보 기재 오류로 인한 모든 불이익은 반환대상자의 책임이므로, 이 경우 전형료는 반환되지 않는다.

5. 입학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 가. 원서접수자는 본교 신입생 모집요강을 반드시 읽어본 후 정확한 자료를 입력하여야 하며, 입력된 자료는 변경이 불가하다. 입력을 잘못하여 생긴 불이익(성적에 관계없이 불합격)은 접수자 본인의 책임이며, 본교에서는 책임지지 않는다.
- 나. 인터넷 원서접수자의 입력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후 재학 중이라도 입학 허가를 취소하기 때문에 정확한 자료를 입력하여야 한다.
- 다.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는 각종 증명서와 일치해야 한다. 단, 성명과 주민등록번호가 상이할 경우 증빙서류 1부를 입학원서 접수 시 제출한다.
- 라. 원서접수 후 제출서류가 있는 지원자가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서류 검토결과 지원자격 조건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하며,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다.

X. 제출서류

연번	구분		국외 근무자의 자녀	전 교육과정 이수 재외국민	북한 이탈 주민	비고
1	입학원서		●	●	●	- 인터넷 접수 후 출력
2	학력조회동의서		●	●		- 인터넷 접수 시 출력 후 작성
3	종합기록표		●	●	●	- 인터넷 접수 시 입력 후 출력
4	초·중·고등학교 성적증명서 및 재학증명서		●	●		
5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	●		- 국내에서 재학한 기간은 학교생활기록부로 대체
6	가족관계증명서(학생)		●			- 부모 이혼 시 친권자의 혼인관계증명서 및 학생 본인 기본증명서 추가 제출
7	출입국사실증명(부, 모, 학생 모두)		●	● (학생만)		- 출생일부터 발급 시까지의 대한민국 출입국 기록이 포함된 증명서 제출(단, 부모는 학생의 중·고교 재학 기간부터 발급 시까지의 기록 제출)
8	사실증명 발급·열람 신청 위임장 (부, 모, 학생 모두)		●	● (학생만)		
9	여권 사본(부, 모, 학생 모두)		●	● (학생만)		
10	재외국민등록부등본(부, 모, 학생 모두)		●			- 영사민원24에서 발급 가능(https://consul.mofa.go.kr)
11	국외 파견 재직자	부모 중 1인 재직증명서	○			- 국외 근무경력 기간 명시
		국외지사설치인증서 사본 또는 국외직접투자신고(수리)서 사본	○			- 국내 은행권에서 발급 - 국외근무 시작일 이전에 승인된 서류 제출 - 재직증명서와 국외지사설치인증서 및 국외직접투자신고(수리)서의 회사명이 다를 경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제출
	자영업	현지 재직회사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국외 세금납부증명서	○			
	현지법인	부모 중 1인 재직증명서	○			- 국외 근무경력 기간 명시
		현지 재직회사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국외 재직회사의 법인세 납부이력	○			
	국외 파견 교직원	부모 중 1인 재직증명서	○			- 국외 근무경력 기간 명시
		파견사실증명서(재직 학교 자체 양식)	○			
	국외 선교활동	부모 중 1인 재직증명서	○			- 국외 근무경력 기간 명시
		파송선교사확인서	○			- 교회 재단 : 제출 가능 - 본인 자발적 선교 : 제출 불가
	국외 유학 연수자	부모 중 1인 재직증명서	○			- 국외 근무경력 기간 명시
		파견사실증명서(재직 회사 자체 양식)	○			
12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	- 해당자에 한함
	택일	학력확인서 또는 학력인정증명서			○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	
		국내 고교 졸업(예정)증명서			○	

※ 재학증명서는 반드시 재학 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국외학교의 경우 재학기간이 증명서상에 불분명하게 기재되어 있을 경우 해당 학교의 학사일정표(School Calendar)를 반드시 함께 제출해야 함

※ 국내 초·중·고등학교의 경우 별도의 재학증명서가 없는 경우 국내 학교생활기록부 전체를 제출해야 함

※ 영어 이외의 외국어로 된 모든 제출서류는 한글 번역본을 공증하여 첨부해야 함

※ 국외에서 발급한 모든 증명서는 해당국에서 아포스티유 확인이나 영사 확인을 필히 받아야 함. 단, 교육부에서 인가한 재외 한국학교의 재 증명서류는 아포스티유 및 영사 확인이 필요 없음

※ 제출서류 외에 사실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음

※ 서류 제출 시 항목별 연번이 낮은 번호의 서류가 위로 가도록 정리하여 제출해야 함

XI. 수험생 유의사항

1. 전형일에는 수험표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청소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을 반드시 지참하여야만 전형에 응시할 수 있다. (해당자에 한함)
※ 신분증 분실자 및 미발급자 :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발급하는 주민등록증, 청소년증 발급 신청 후 신분증 발행 전 임시로 발급되는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확인서, 청소년증 발급 신청 확인서를 지참해야 함
2. 입학원서의 입력사항 또는 제출서류를 허위로 기재하였을 경우와 기타 부정한 사실이 발견되면 합격 또는 입학을 취소한다.
3. 제출서류 상의 성명이 각각 다른 경우에는 동일인임을 증명하는 해당국 법원의 동일인 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4.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수정할 수 없다.
5. 합격자 중 졸업예정자가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할 경우 합격 또는 입학을 취소한다.
6. 입학전형 성적 및 자료는 공개하지 않으며, 본 요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교 학생선발방법 및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가 정하는 결정에 의한다.

XII. 합격자 유의사항

1. 최초 합격 여부는 개별통지하지 않으며, 본교 입학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야 한다.
2. 합격자는 본교 홈페이지에서 합격통지서, 합격자 안내문 등을 출력하여 등록기간 내에 등록을 필해야 한다.
3. 최종 등록자 추가 제출서류
가. 제출 대상자 : 2023학년도 3월 입학 재외국민 특별전형 최종 등록자 중 고교 졸업예정증명서 제출자
나. 추가 제출서류
1)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1부(공통)
2) 고등학교 최종 성적증명서 1부(공통)
3) 국외고교의 경우 출입국사실증명서(부, 모, 학생 모두) 각 1부(해당자에 한함)
※ 고교 졸업 일자까지의 출입국 기록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4) 부모 중 1인 재직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5) 세금 관련 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다. 제출기간 : 2023.02.17.(금) 15:00까지 도착분에 한함
라. 제출장소 : (우) 17092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용인대학로 134 용인대학교 대학본부 1층 입학관리과
마. 제출방법 :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제출(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바. 유의사항 : 국외에서 발급한 모든 증명서는 해당국에서 반드시 영사확인 혹은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을 받아서 원본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영어 이외의 외국어로 된 모든 제출서류는 한글 번역본을 공증하여 첨부해야 함

4. 등록금 환불 절차

- 가. 합격자가 등록을 포기하고자 할 경우
1) 본교 입학홈페이지 ipsi.yongin.ac.kr에 접속하여 등록 포기 신청 버튼을 클릭
2) 로그인하여 등록 포기 신청
- 나. 등록금 환불 시 주의사항
: 등록금 환불 신청자는 환불 신청을 한 시점부터 불합격으로 처리하므로 기 제출한 등록금 환불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없다.
- 다. 등록금 환불금액

구 분	2023년 2월 28일까지	2023년 3월 1일부터
금액	등록금액의 100%	본교 「등록금 반환기준」에 의거 일정 금액 공제 후 지불

5. 합격 취소

- 가. 합격자(총원 합격자 포함)가 지정기일 내에 등록을 필하지 않을 때에는 합격이 자동 취소된다.
- 나. 복수지원 및 이중등록금지 사항을 위반하여 지원하였을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본교에 입학하여 재학 중이라도 합격 및 입학을 취소한다.
- 다. 입학을 허가한 자를 대상으로 전적학교로의 학력조회 등을 실시하며, 확인 후 자격 미달자이거나 허위사실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재학 중이라도 입학을 취소한다.

XIII. 대학안내

1. 장학금 안내

가. 교내장학금

: 이사장, 성적우수(I, II, III), 체육우수, 글로벌인재, 인성, 보훈, 공로(학생간부), 교직원직계자녀, 야간학과, 특별, 생활복지, 가족복지, 언론(대학신문사/교육방송국), 근로(국가및일반), 각종경시대회, 외국인유학생, 학군간부, 공무원(군)위탁생, 입영훈련우수후보생, 고시, 인턴십, 매칭, 포인트, 홍보도우미, 버디, 교직원기금, 코리아CC, 국제교류, 학과평가우수, 싱글맘 등

나. 교외장학금

• 학과지정장학금

: 삼구구자관장학금(경찰행정학과), 조진형장학금(경찰행정학과), (재)동화산업장학재단장학금(경찰행정학과), 경찰행정학과재직교수장학금(경찰행정학과), 김상용장학금(경영학과), 경영학과장학금(경영학과), 진흥무역장학금(물류통계정보학과), 소치장학금(물류통계정보학과), 유종영장학금(물류통계정보학과), 씨테크장학금(물류통계정보학과), 신성기업장학금(특수체육교육과), 특수체육교실교육지원장학금(특수체육교육과), 리더스클럽장학금(경호학과), 경호학과동문회장학금(경호학과), 발광엔터테인먼트장학금(동양무예학과-택견), 축구부지정장학금(파인트리천강용님), 격기지도학과(씨름)장학금, 태권도학과지정장학금, 한국가스공사(태권도학과), 한국문화유산연구원장학금(문화재학과), 태건장학금(문화관광학과), 문화콘텐츠학과재직교수장학금(문화콘텐츠학과), (주)단잡(문화콘텐츠학과), 로우핸드(문화콘텐츠학과), 검도동문회장학금(검도), CEO29기장학금(경영학과, 문화관광학과), 중국학과동문회장학금(중국학과), 용인대81학번동기회장학금(유도,태권도,복싱,씨름), 소액정기기부장학금 등

• 홈페이지에 공지하여 대상자를 추천하는 장학금

: (재)한국지도자육성장학재단, (재)아산사회복지재단, (재)한원장학회, KRA농어촌희망재단, (재)주심장학재단, (재)우리다문화장학재단, (재)하나금융나눔재단, (재)용인시인재육성재단, 한국장학재단 푸른등대기부장학금, (재)배정장학회, (재)서울장학재단, (재)미래에셋박현주재단, (재)S&T장학재단, (재)삼원장학재단, (재)성남시장학회 등

• 단과대학으로 추천을 의뢰하여 대상자를 정하는 장학금

: 용인대학교동문회장학재단, 경기도체육회 등

• 장학재단에서 지급대상자를 정하여 지급하는 장학금

: 용인대학교 직원노동조합, 용인대학교 여교수장학회, (재)삼송장학회, (재)형애장학회, (재)해성문화재단, (재)정산장학재단, (재)본술김종한장학재단, (재)한석경장학회, (재)영풍문화재단, (재)금옥학술문화재단, (재)이스테파노(재원)장학회, (재)성혜장학회, (재)덕영재단, (재)농협재단, 경기도태권도동문회 등

• 기타 : 각 지방자치단체 애향장학금, 의용소방대원자녀장학금, 각종 지정기부장학금 등

다. 국가장학금

: 국가장학금(I 유형, II 유형), 국가근로장학금

라. 문의

: 각종 교내외장학금과 관련한 상세한 안내는 본교 홈페이지(학사지원-장학대출제출-장학대출)를 참고하시면 자세한 안내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2022학년도(전년도) 신입생 등록금 현황

가. 본교 2022학년도 계열별 등록금액은 아래와 같으며, 2023학년도 신입생 등록금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단위 : 원)

계열	입학금	수업료(학기)	합계	비고
인문사회	153,000	3,413,000	3,566,000	
자연	153,000	3,836,000	3,989,000	
체능	153,000	3,821,000	3,974,000	특수체육교육과 포함
예능	153,000	4,399,000	4,552,000	

3. ROTC(학생군사교육단) 안내

R.O.T.C(Reserve Officers' Training Corps) 제도는 우수한 대학생들을 장교로 육성하기 위하여 대학생들을 자유롭게 하면서 여가를 최대한 활용하고, 2년간(3, 4학년) 소정의 군사교육을 병행하여 졸업과 동시에 소위(국가공무원 7급)로 임관하여 소대장 및 참모 직책을 경험하는 등 2년 4개월 동안 국방의 의무를 마치고 전역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전역 후에도 높은 취업률을 보이고 있는 R.O.T.C 출신들은 사회 각계각층에 진출하여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문무겸전의 R.O.T.C 제도는 대학생에게만 주어지는 선택된 제도입니다. 우리 용인대학교는 2005년 국방부 및 교육부로부터 학군단 설립인가를 승인받아 2006년 3월 8일부 창설, 용인대학교 학군사관 후보생 1기생(학군 46기)이 처음으로 입단하여 현재까지 574명이 장교로 임관하였습니다.

가. 선발방법

- 1) 모집시기 : 연 1회(3월 ~ 7월)
- 2) 지원자격
 - 연령 : 임관일 기준 만 20세 이상 27세 이하인 사람
 - 학력 : 4년제 대학 1·2학년 재학생
- 3) 평가요소별 배점

구 분	계	1 차 선 발			2 차 선 발(최종평가)				
		필기고사	대학성적	수능 또는 내신	면접평가	체력평가	한국사인증	신체검사	신원조사
2학년(64기) 정시선발	1,000점	220점	100점	250점	300점	100점	30점	합·불	합·불
1학년(65기) 사전선발	900점	220점	-	250점	300점	100점	30점	합·불	합·불

※ 최종선발에서 동점자는 필기, 면접, 체력, 대학성적, 수능 또는 내신성적순 선발

나. 다양한 혜택

- 1) 사관후보생 혜택
 - 학군사관 후보생 신분증 발급
 - 육군 휴양시설 이용 가능
 - 육군 문화공연 및 협약 업체 할인 혜택
 - 국내 및 해외 전사적지 탐방
 - 조직관리의 경험을 전수하여 리더십과 자신감 배양
 - 대학별 우수 후보생 장학금 지원 및 ROTC 장학재단 등 장학금 지원
 - 단기 복무장교 장려금(600만원) 및 2년간 매월 교보재비 지원
- 2) 임관 후 혜택
 - 장교과정 중 최단기간 복무(28개월) / 전공학과와 연계된 병과 근무 가능
 - 장기 지원 시 국내·외 대학원 국비취학 가능
 - 숙소, 병원, 휴양시설, 군 운영매장 이용
 - 임관 시 연봉 약 2,500만원 수준, 전역 시 약 5,000만원 목돈마련 가능 * 후보생 교육기간을 호봉에 인정, 1년 후 중위 진급
 - 군 복무 기간 중 출·퇴근 근무 ⇨ 지속적인 자기개발 활동 가능
- 3) 전역 후 혜택
 - 전역 전 각종 취업설명회 참석 / 취업여건 보장
 - 각계각층의 ROTC 선·후배들의 인적 네트워크 형성
 - 전국 ROTC 동문 단체 가입 ⇨ 사회생활 원동력 * 현재 전국 시·도 단위, 직장별 동문회 결성(약 25만명 규모)

4. 교내 주요업무별 안내부서 및 전화번호

구분	부서명	전화번호
입학전형 및 제반 업무 안내	입학관리과	1668-4280
학점, 전과, 휴학, 교직이수 안내	학사관리과(학적계)	031-8020-2514~5, 2993~4
수강신청 안내	학사관리과(수업계)	031-8020-2510~1, 2516, 3022
등록금 납부(등록) 관련 안내	회계과	031-8020-2529, 2530
ROTC 안내	학생군사교육단	031-8020-3477~8
각종 장학제도 및 학자금 대출 안내	장학과	031-8020-2957, 2869
교통 안내	학생지원과	031-8020-2520~1, 2892
각 학과 안내	무도대학 교학과	031-8020-2855
	체육과학대학 교학과	031-8020-2660
	문화예술대학 교학과	031-8020-2688
	시용합대학 교학과	031-8020-2745
	보건복지과학대학 교학과	031-8020-3074



학력 조회 동의서

Office of Admission, Yong In University
134 Yongindaehak-ro, Cheoin-gu, Yongin-si, Gyeonggi-do 17092, Korea

Tel 82-31-8020-2918
Fax 82-31-8020-2737

To whom it may concern :

I have applied to Yong In University in Yongin-si, Korea for the 2023 academic year and agree that Yong In University could rightfully make a request to you for my school records.

In this regard, I would like to ask you to provide your full assistance to Yong In University when they contact you regarding verification of enrolment.

Name : _____

Date of birth : _____
yyyy/mm/dd

Date of graduation : _____
yyyy/mm/dd

High School Name : _____

High School Address : _____

Tel : _____

Fax : _____

E-mail : _____

Website address : _____



Signature



Date

yyyy/mm/dd

종합기록표

지원자 성명		수험번호		주민등록번호		모집단위	
지원 구분	☐ 국외근무자의 자녀 ☐ 전 교육과정 이수 재외국민 ☐ 북한이탈주민						

○ 지원자 기재사항

학교명	재학 기간		학교 소재지 (국가명)	국내 학교에 해당하는 학년 · 학기																													
	기간	재학 연수		학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학기▶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총 재학기간	년 개월	국외학교 재학 기간	년 개월	졸업년도															졸업 유무														

○ 부모 기재사항 ※ 학생의 재학 인정 기간과 중복되는 기간만 기재

부(父)	국외 체류 기간				모(母)	국외 체류 기간			
	기간	체류 연수	체류국	근무처		기간	체류 연수	체류국	근무처
참고사항	☐ 부모 이혼 ☐ 아버지 사망 ☐ 어머니 사망								

위 기재사항은 서류심사 시 기본자료로 활용됨을 숙지하고
사실과 다름없이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2. .

작성자 :

(인 또는 서명)

지원자와의 관계 :

※ 특이사항(수험생 기재란)	※ 특이사항(대학담당자 기재란)



[재외국민 사실증명 발급 · 열람신청서]

사실증명 발급 · 열람 신청서

(APPLICATION FOR ISSUANCE / INSPECTION OF CERTIFICATE OF FACT)

※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을 부, 모, 학생 각각 1부씩 작성

접수번호 (Receipt No.)	접수일 (Receipt Date)	발급일 (Issue Date)	처리기간 (Processing Period)	즉시 (Immediately)
발급대상자 (위임한 사람) Principal (Authorizing Person)	성명 (Full name)	연락처 (Phone No.)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Resident Registration No. (Alien Registration No.))			

증명종류 Type of Certificate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1)통 Certificate of Fact on Entry and Exit (1) copy(ies)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통 Certificate of Fact on Alien Registration () copy(ies) [] 외국인등록 열람 ()건 Inspection of Alien Registration () time(s)
-----------------------------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의 영문 성명 병기신청 (국민만 해당) This question is for Koreans only	[]포함 Yes []미포함 No
--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의 경우, 과거 등록번호(주민등록 · 외국인등록 · 국내거소신고 번호) 및 체류지 포함 여부 I want previous registration number and address to be shown on the Certificate of Fact on Alien Registration	과거 등록번호 Previous Registration Number []포함 Yes []미포함 No 과거 체류지 변동 사항 Previous Address []포함 Yes []미포함 No
---	---

출입국 조회기간 (Reference Period For Entry and Exit) . . . 부터(from) . . . 까지(to) ※ 국외 재학기간에 해당되는 기간 입력

용도 (Purpose)

신청인 (위임받은 사람) Applicant (Authorized Person)	성명 (Full name) 용인대학교 입학관리과 재외국민 특별전형 담당자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Resident Registration No.(Alien Registration No. or Domestic Residence Report No.)
	전화번호 (Telephone no.) 031-8020-2918	발급대상자와의 관계 (Relationship to Principal) 대학입학 업무자

「출입국관리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실증명의 발급 · 열람을 신청합니다.
I hereby apply for the issuance or inspection of Certificate of Fact under Article 88 of Immigration Act and Article 75 of Enforcement Rules of the Immigration Act.

년 Year 월 Month 일 Day

신청인 Applicant Name

(서명 또는 인)(signature or seal)

수원출입국 · 외국인청장 귀하

To the Chief of Suwon Immigration Office

위임장 Power of Attorney	
위 발급대상자(위임한 사람)는 위와 같은 사실증명의 발급 · 열람 신청 및 수령에 관한 사항을 위 신청인(위임받은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I, the above Principal(authorizing person), hereby authorize the above applicant(authorized person) to apply for and receive the Certificate of Fact.	
발급 · 열람 대상자(위임한 사람) Name of Principal(Authorizing Person)	년 Year 월 Month 일 Day (서명 또는 인) (signature or seal)

[재외국민 코로나19 관련 지원자격 인정 신청서]

코로나19(COVID-19) 관련 지원자격 인정 신청서

인적사항	성명		수험번호	
지원구분 (해당란에 √)	☐	국외근무자의 자녀	☐	전 교육과정 이수 재외국민
	☐	북한이탈주민		

지원자격 인정 희망 기간		인정 요청 사유
일자	해당 학년 / 학기	
~		
~		
~		

지원자 성명 : _____ (인/서명)

용인대학교 총장 귀하



- ※ 코로나19로 인한 재직기간, 재학기간, 체류기간 등 지원자격 미충족 사유가 발생한 경우 관련 소명자료를 통해 해당 기간에 대한 지원 자격 인정이 가능함
- ※ 코로나19에 의한 사유임이 명확히 입증되는 기간에 한하여 신청 가능하며, 자격심사 과정에서 관련 추가 자료 또는 소명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 부족 또는 추가 자료 미제출 시에는 자격 인정이 불가함
- ※ 관련 증빙 서류와 함께 제출 요망